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42
----------	-------

발의연월일 : 2026. 1. 22.

발 의 자 : 김상훈 · 안철수 · 이현승
고동진 · 김대식 · 이달희
윤한홍 · 이만희 · 조승환
권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온라인 광고가 불법 또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시정요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회의 개최를 통해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AI 기반 영상 편집과 가상 전문가 등장 방식의 광고가 급속히 유통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콘텐츠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정식 회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므로 현 체계상 즉각적인 차단이 어려운 상황임. 이로 인해 건강·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광고가 플랫폼 상에 장기간 노출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 및 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회의 소집 없이도 신속한 심사 및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확산형 광고

에 실시간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전단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로,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를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금지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3. 「약사법」 제61조의2 또는 제68조에서 금지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4. 「화장품법」 제13조에서 금지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회의 등) ① ~ ③ (생략)	제23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 ----- ----- -----, ----- -----.
<신 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신 설>	2.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금지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